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우선권증명서류의 국가 간 전자적 교환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로 일원화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이 누락된 경우뿐만 아니라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잘못 제출된 부분의 보완을 명하거나 정정하는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명세서·도면 등의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무권리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에는 발명자의 추가·정정 신청 시 특허권자 등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6.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특허출원일자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특허청장

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제25조제6항 중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어야 하는 정보로서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를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통하여 송달(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코드”를 “접근코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4조의5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앞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을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있는”을 각각 “있거나 잘못 제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을 “부분 또는 정정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을 “부분 또는 정정 부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분”을 “부분 또는 정정 부분”으로 한다.

제106조의14의 제목 “(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을 “(추가수수료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의한 서류”를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6조의15의 제목“(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발명의 단일성요건 미 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로,“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납부하여야”를“납부해야”로 한다.

제106조의39제4항 전단 및 후단 중“제106조의14제5항”을 각각“제106조의14제7항”으로 한다.

제120조의6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2) 중“날인합니다”를“날인하며,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에 【특허고객번호】를 적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의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1) 중“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인감】란을 삭제하고 【제출인】란의”를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가목1)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통

※ 외국 법인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가목(1)(다) 중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통”을 “1통”으로 하고, 같은 (1)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명칭·주소변경증명서,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선언서 또는 국내 영업소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1통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적습니다. 다만, 【접근코드】란은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송달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9호나목 중 “적습니다.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송달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1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의 내용란 중 “누락되어 있어 그 누락된 부분”을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되어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도면의 내용란 중 “누락되어 있어 그 누락된 도면”을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되어 그 누락된 도면 또는 정정하는 도면”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내용】란의 다음 행에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란을 만들어 추가 또는 정정할 부분을 명시합니다. 누락된 도면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도면이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도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예] 【제출내용】

【누락된 부분】

별지 제41호서식 Box No. VI PRIORITY CLAIM란의 Incorporation by reference란 중 “referred to in Rule 20.5(a)”를 “referred to in Rule 20.5(a), or an element or part of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referred to in Rule 20.5bis(a)”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란의 인용에 의한 보완란 중 “도면의 일부”를 “도면의 일부, 또는 규칙 20.5bis(a)에서 규정하는 요소 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제1호 추가수수료 납부의 내용란 중 “못하여”를 “못하거나,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호 추가수수료

납부의 관련 규정란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5항”을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특허법」 제217조의2제4항, 「상표법」 제217조제4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화된 내용을 통지받은 출원인등이 그 전자화된 내용과 당초 제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전자화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정 부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접수번호】

【정정대상항목】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 기재요령 제6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u><단서 신설></u></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p> <p>1. ~ 6. (생략)</p>	<p>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 ----- ----- ----- ----- -----.</p> <p><u>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② 삭 제

③ (생 략)

제24조(특허출원번호의 통지) 특

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2. 특허출원일자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계지식 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어야 하는 정보로서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를 말한다.

⑦ (생략)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통하여 송달(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접근코드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

4. ~ 7. (생략)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는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

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① -----

-----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

1. -----

----- 있거나 잘못 제출된 -----

2. -----
----- 있거나 잘못 제출된 -----

② -----

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락된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 (생략)

④ ~ ⑥ (생략)

제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부분 또는 정정 부분-----

③ -----

--- 부분 또는 정정 부분-----

----- 제출해야 -----

1. ----- 부분 또는 정정 부분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4(추가수수료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5(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①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
----- 다른 서류---
----- 제출해야 -----.

제106조의15(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①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

----- 납부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④ (생 략)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 ③ (생 략)

④ 제106조의14제5항·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5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① 법 제217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 10. (생 략)

11.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12.·13. (생 략)

②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6조의14제7항-----

----- 제106조의14제7항 -----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①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2.·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